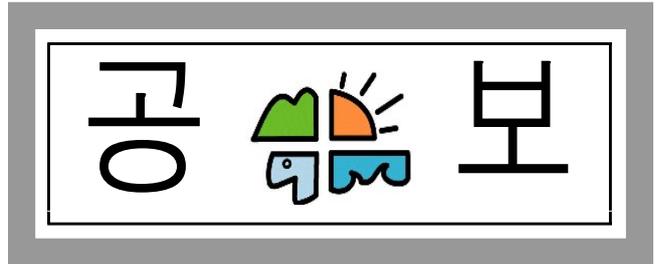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85호 2020년 9월 11일(금)

규 칙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 고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8

입법예고

-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20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2223, FAX : 639-2799)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1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77호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을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부분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곤란할 때”를 “곤란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철거지역”을 “철거지역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속초시 급수 조

례」 제39조제1항”을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으로, “사용자”를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경우”를 “경우 사용료의 10000분의 5219를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공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나.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6.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한다.

제2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서식 까지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와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속초시 하수도사업소 호 관련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증

사업장소재지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일 때는 등록번호)	
점용장소	
점용목적	
점용면적	
최초허가일	
점용기간	
허가조건	
<p>「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속 초 시 장 직인</p>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0호 서식]

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결 재			지정 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교부 연월일	사진
주무관	담당	과장				법인등록번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 치 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시 공 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속초시 동 번지(통 반)						
	관 중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검사일자 (. .)	보완 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한
30일

신 청 인	하수번호		정리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상 호	
	업 종		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				

신 청 내 용	
------------------	--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	처리기간 즉 시
---------------------------------	-------------

권리자의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금	과오납 월 일	환부이자	
						일시	금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1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 참고 : 1.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1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0년 09월 11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0. 09. 11.~ 09. 25.(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동명동	55-4	대	152	11	김혜정	동명동 55-4번지 외 2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020-건축과-신축허가-48 (2020.06.29.)	건축주 : 김혜정
	55-6	대	264	12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774)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0.6.9.)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설치 목적(안 제1조)
- 나. 계정 구분(안 제2조)
- 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 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4조)

-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안 제5조)
- 바. 예탁 및 통지, 이자, 용자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 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예산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14), 팩스(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033-639-2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속초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 및 통지) 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각종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8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통합기금의 용자) ① 통합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일반·특별회계 징

수관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용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④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⑤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⑥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⑦ 「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⑧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요구서

(단위 : 천원)

부서명	기금명	예탁가능일	예탁가능금액	비고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금·특별회계 운용관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 신청서

신청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신청금액	
용자금 상환계획	
<p>위와 같이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용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용자신청부서의 장 인</p> <p>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p>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 약정서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금(이하 “용자금”이라 한다)을 용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용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용자조건) “을”이 인수할 용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연월일 : 년 월 일
2. 용자목적 :
3. 용자금액 : 금 원정(W)
4. 용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용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년 월 일까지 이를 년 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월 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용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용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월 일부터 해당연도 월 일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2. 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하여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기일 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총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용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 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 상황

3. 융자금 운용 상황

4.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용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갑”과 “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서의 효력은 용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을”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①

을 : ①